

1. 개정이유

화물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운전 중 충분한 휴게시간 확보를 위하여 연속운전 및 휴게시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속운전 및 휴게시간 개정(제21조제23호, 제22조제6호)

-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운전 중 충분한 휴게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휴식하도록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4시간”을 “2시간”으로, “30분”을 “15분”으로 하고,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45분”을 “30분”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주행 환경을 고려하여 2시간 연속운전 후 휴게시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

제22조제6호 본문 중 “4시간”을 “2시간”으로, “30분”을 “15분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“45분”을 “30분”으로 한다.

별표1 비고 제8호 중 “업종별 화물자동차”를 “화물자동차”로, “유형은”을 “유형 및 최대적재량”으로, “유형을 기준으로 하고, 최대 적재량은 구조변경 전의 최대적재량”을 “유형 및 최대적재량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21조제23호, 제2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1조(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) 법 제11조제1항 및 제22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,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삭제 2. ~ 22. (생략) 23. 휴게시간 없이 <u>4시간</u> 연속 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<u>30분</u>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 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<u>45분</u>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. 가.·나. (생략) <신설> 24.·25. (생략)	제21조(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)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2. ~ 22. (현행과 같음) 23. ----- <u>2시간</u> ----- ----- <u>15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30분</u> ----- -----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다. 주행 환경을 고려하여 <u>2시간</u> 연속운전 후 휴게시간 확보가 불가한 경우 24.·25.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)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운행의 확보와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·2. 삭제 3. ~ 5. (생략) 6. 휴게시간 없이 <u>4시간</u> 연속운전한 후에는 <u>30분</u>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질 것. 다만, 제21조제2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 까지 연장운행을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<u>45분</u>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. 7. (생략)	제22조(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)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3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<u>2시간</u> ----- ----- <u>15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30분</u> ----- ----- 7. (현행과 같음)
---	--